

2018년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업무처리기준

2018. 3.

우 수 장 학 부

목 차

I.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개요	4
II. 신규장학생 선발	6
III. 계속장학생 지원	11
IV. 일시지원 선발	15
V. 장학금 지급 및 반환	18
VI. 사업 운영관리	21
VII. 사업 추진일정	25
[참고1] 제출서류 총괄표	26
[참고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35
[참고3] 신청인 동의서	40
[참고4] 2018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43

2018년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7년	2018년
저소득층 지원체계	○ 해당사항 없음	○ 저소득층 가점부여 방식 - 총점 10% 내외로 소득구간(분위) 가점으로 할당, 소득수준 낮을수록 높은 가점 부여
선발방법	○ 우수학생을 재단이 서류심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직접 선발	○ 대학 신청서 제출 대학 대상 선발인원 배정 및 대학 자체 선발
선발기준	○ 성적기준 외 대상자의 우수성, 학문에 대한 열정 등을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및 심층면접을 통해 평가	○ 학업성적 50% + 학생역량 50% (소득구간 항목 포함) 비중으로 평가 * 소득구간 확인불가자는 가점 부여 시 최저점 부여
지역별 선발비율	○ 해당사항 없음	○ 수도권:비수도권 = 50%:50%
사후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목적에 부합한 성과 확인을 위해 장학생 진로추적 조사 실시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개요

1. 지원규모

- (지원예산) 22.4억 원*
* '18년 이전 선발된 장학생 지원분 포함
- (지원인원) 280명 내외
 - 신규장학생 140명 내외, 계속장학생 140명 내외 지원

2. 지원금액

(기준: 학기)

구분	공통 등록금 (단 잔여예산 발생 시 생활비 지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지원내용		생활비 180만 원

- 공통 지원
 - (등록금) 학기별 등록금 전액
 -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 대상자는 등록금 학생 부담분에 한해 장학금 지원
 - (생활비) 잔여예산 발생 시 연간 150만 원 지원
 - * '18년 2학기 장학금 지급 후 잔여예산을 고려하여 '18년 신규장학생 대상으로 지급 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 학기당 180만 원 추가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 보건복지부 연계 확인 불가 시, 심사기간 내 수급자증명서 제출 필요(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본인 명의 서류만 인정, 공문 제출)

- 선발 학기부터 최대 2년간 지원(정규학기 내 최대 4개 학기)
 - 편입, 재입학 시 이전 대학에서의 동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관리
 - 주전공학과 정규학기 외 추가 이수기간(복수전공 등)은 정규학기로 불인정
 -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학사학위에 한하여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일시지원 선발자는 선발 학기에 한해 1개 학기 지원

구분	[대학]	[재단]	[대학/학생]	[재단]
내용	대학별 대학 신청서 제출	대학별 배정인원 안내	[대학] 대학별 자체선발 [학생] 대학 추천자에 한해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 제출)	장학생 최종 선정 및 발표, 장학금 지원
일정	2월	3월	4월	4월

1. 대학 참여

- (대상대학) 국내 4년제 대학^{주1)} 중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주2)} 설치 대학
 - 주1)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및 '18년도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제한대학 제외
 - 주2) '18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따름
- (신청방법) 예술 및 체육계 대학 신청서 제출
 - 대학 신청서에 선발기준* 및 지원계획 등을 포함([붙임2] 참고)
 - * 전공별(음악, 미술, 체육, 공연예술) 선발기준 구분 기술하되 대학 특성화 방안에 따른 비 해당 전공은 작성 생략 가능
 - ※ 본·분교는 학교별 신청서 제출 필수(캠퍼스 보유대학은 통합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캠퍼스별 수도권여부가 상이할 경우에 한해 캠퍼스별 제출)

2. 선발인원 배정

- (배정개요)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계
신규장학생	70명	70명	140명

- ※ (지역별 배정비율) 수도권 : 비수도권 = 50% : 50%
- ※ 대학별 균형 선발을 위해 1개 대학의 선발인원은 총 선발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 '18년 대학 신청서 미제출 대학은 신규장학생 선발 제외

- (배정기준) 대학별 재학생 수에 따라 선발인원을 배정하되, 지역별 배정비율(수도권:비수도권 = 5:5) 적용

$$\text{대학별 배정인원} = \text{신규 선발인원}^* \times \frac{\text{대학별 재학생 수}^{**}}{\text{참여대학 총 재학생 수}^{**}}$$

-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신규 선발인원 140명 내외
- ** 2017년 대학정보공시 상 예술 및 체육계열 재학생 수 적용
- ※ 단, 지역별 선발비율(수도권:비수도권=50%:50%) 적용하여 배정
- ※ 소수점 처리 방식은 [참고]에 따라 적용

< [참고] 배정인원 소수점 처리 상세 적용 방안 >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반올림 후 인원합계가 배정가능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가감 조정
- ▶ (반올림 후 인원합계 > 배정가능인원) 반올림 적용에 따라 올림으로 정수 처리된 학교 중 소수점 이하가 가장 낮은 순으로 대학별 1명씩 인원 차감
- ▶ (반올림 후 인원합계 < 배정가능인원) 반올림 적용에 따라 내림으로 정수 처리된 학교 중 소수점 이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대학별 1명씩 인원 추가
- ▶ (동점대학 가감처리)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할 경우 동점인 대학에 추가 또는 차감 처리를 동일하게 적용

3. 선발대상

- (선발대상)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3학년
 - ※ 위 계열구분은 '18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따름
- (선발 제외대상)
 - '18년도 현재 예술체육비전장학생 자격 유지자 또는 기존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영구탈락(자퇴, 제적, 편입, 초과학기 재학, 성적미달 등)된 학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우수장학금* 기수혜자
 -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등

- 계약학과*(등록금 전액/일부지원) 선발 제외
 - *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채용조건형, 재교육형 등)
 - ※ 학문후속세대 및 석·박사 진출 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목적 반영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등록금 학생부담분 등** 지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 상기 법령에 따른 대학 의무부담 교육비 면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후, 등록금 학생 부담분에 한해서만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지원 가능하며, 생활비 등은 선발연도별 지원기준 충족시 지원
 - ※ 해당 장학금 신청기간 내 미신청하거나, 학생 본인 의사에 따라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을 선택하더라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지원 불가

4. 선발기준

- (선발전공)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적으로 전공별 (음악, 미술, 체육, 공연예술) 선발인원 결정
 - ※ 단, 특정 전공에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르게 선발인원 배분할 것을 권고
- (선발방법)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별 자체 선발
- (선발기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점을 부여하고,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을 고려하여 대학 자체 선발
 - 학업성적 50% + 학생역량 50%(소득구간* 항목 포함) 비중으로 평가
 - * 소득수준별로 가점을 차등 부여하되, '18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확인 불가자는 10구간(분위)로 간주하여 최저점 부여

구분	학업성적		소득수준 및 학생역량	
	백분위 점수	배점(50점)	실적내용	배점(50점)
평가 기준	100점 ~ 97점	50	▪ 소득구간	10
	96점 ~ 93점	48	▪ 공모전 입상	15
	92점 ~ 90점	46	▪ 대회 수상	15
	89점 ~ 87점	44	국제대회	15
	86점 ~ 83점	42	국내 전국	12
	82점 ~ 80점	40	대회 시·도	9
	79점 ~ 70점	-	▪ 대학별 별도기준	10

※ 평가항목은 변경 불가하나, 항목별 총 배점 내 세부 배점기준은 대학별 수립 가능

(장학생 추천) 배정인원의 최소 2배수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를 추천

※ 2배수 이상 미확보 대학은 신규 선발 제한 가능

(후보자 관리) 미추천된 차순위 학생은 학생별 후보 순위를 부여하여 후보자로 관리

(대체선발) 신규장학생 중 영구탈락자* 발생 시 해당 대학에서 기 확보한 후보자를 대체자로 선발하여 잔여학기** 장학금 지원

* 자퇴, 성적기준 미충족, 장학생 포기 등으로 인한 장학생 자격 박탈(상실)자

** 대체선발자는 영구탈락자의 잔여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최대 3학기, 단, 학제별 정규학기 수에 따라 지원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신규장학생 대학추천 등 관리자포털 사용매뉴얼은 별도 공지

5. 학생 신청

(신청대상) 대학별 선발기준에 따라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신청 시 4개 전공(음악/미술/체육/공연예술) 중 1개 분야만을 선택 하여 신청

※ 신청 시 선택한 전공은 변경 불가하며 본인과 무관한 전공을 신청한 경우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과 가장 연관된 전공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화면 내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선택 ➡ 신청하기
 ※ 장학금 신청 시 학생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휴대폰 인증절차가 있으므로 본인 명의 휴대폰 필요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학업계획서, 전인적인재성장계획서 등)를 지정된 파일 형식으로 신청기간 내에 제출

※ 제출서류 관련 상세내용은 [참고1] 제출서류 총괄표' 참고

※ 신청서류 중 미비서류 또는 미제출서류 존재 시 심사탈락

※ 신청기간 및 상세 신청방법 별도 공지

계속장학생 지원

구분	[재단]	[대학]	[재단]
내용	우선감면 대상자 안내	장학생 심사 및 추천	장학생 선정 및 발표, 장학금 지원
일정	1학기: 1월 2학기: 7월	1학기: 1~2월 2학기: 7~8월	1학기: 3월 2학기: 9월

1. 일반 계속장학생

- (지원대상)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 기 선발된 학생 4학년 진급자가 아닌 학생
- (지원기준) 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모두 충족 시 등록금 계속지원
- * 대학 학사규정에 따라 성적산출이 가능한 가장 최근 정규학기

○ 정규학기: 대학의 학과별 학사학위 수업연한 내 학기를 기준으로 판단 하되 복수전공 및 편입학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수학기는 정규학기로 보지 않음

- 성적기준: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0이상/4.5만점(3.30이상/4.3만점)
 - ※ 백분위 점수 또는 평균평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지원
-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 성적산출 및 학사원장 입력 시 유의사항 >

○ 아래 중 성적산출 기준은 '17년 1학기 취득성적부터 적용

구분	유의사항
산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분위]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백분위점수 86.9인 경우 86으로 입력(계속지원기준 미충족) • [평균평점] 대학별 학칙에 의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하여 성적 산출 • 직전학기 평균 및 총평균 성적 산출 시 학칙에 의거하여 계절학기 및 재수강 성적 포함 가능(단, 개인별 또는 과목별로 일부 반영 불가)
이수 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학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 미반영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 시	<p>[직전학기 성적산출 불가재(Pass/Fail 과목만 이수 등) 지원 기준] 총 평균성적(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성적 포함)이 계속지원 성적기준(최소이수학점 기준은 제외)을 충족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ss/Fail 과목 수강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수학점 및 성적취득 연도/학기는 해당학기로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17-2학기 Pass/Fail 과목만 수강하여 15학점 취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5, 최종성적 취득년도/학기: 2017/2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Fail로 기재되어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성적 적용 •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Fail 등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직전학기 성적 삭제(포기)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할 경우,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래 성적이 계속지원기준 통과 시 지원 가능(해당 성적 증빙 자료 보관 필요) -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이 삭제될 경우, 학사원장에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입력(전과 전후 성적 증빙 자료 보관 필요)
직전학기 성적 산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학기 성적 산출 시 학기별 계속장학생 추천일정을 기준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장학생 추천기간 이후 성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불인정
교환학기	<p>[교환학생 지원 기준]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재학으로 인정하며, 취득 성적이 소속대학 내규에 의한 변환점수 기준에 따라 계속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속 국내 대학의 등록금 규모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2010년 2학기 교환학생 선발 학생부터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학생기간 동안 소속 국내 대학으로부터 학비면제를 받은 경우 및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인턴십의 경우, 소속 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대학에서 인문사회계 관련 인턴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소속 국내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국내 대학 학점 교류 등의 경우에도 위의 내용에 준하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별 계속장학생 추천기간 중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교환학생 파견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 포함)이 계속 지원 성적기준(최소이수학점 기준은 제외) 충족 시 지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이후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 - 학사원장 상 해당학기 학적상태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전과학생 학적상태	<p>[전과학생 지원 기준] 장학생은 소속대학과 전공학과(부)를 변경할 수 없으나 전공학과(부)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인문사회계열 내에서 변경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편입 등 소속 대학 변경은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퍼스간 이동은 가능하나, 본·분교간 이동은 인정 불가 - 전공변경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장학생 자격탈락 및 장학금 지원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원장 상 해당학기 학적상태를 “재학(전과)”로 입력

초과 학기자 학적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한 경우,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재학(초과학기)”로 입력 - 장학금 지원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 제외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100년장학금 심사 시 학년 정보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학년 기재

2.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

구분	[재단]	[학생]	[대학]	[재단]
내용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 안내 (우선감면 대상자)	온라인신청 (진도보고서 제출)	장학생 심사 및 추천	장학생 선정 및 발표, 장학금 지원
일정	1학기: 1월 2학기: 7월	1학기: 1~2월 2학기: 7~8월	1학기: 1~2월 2학기: 7~8월	1학기: 3월 2학기: 9월

- (평가대상) '16년 이후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 기선발된 학생 중 4학년 진급자*
- 진도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1년간(4학년) 지원 여부 결정
 - * 해당학기 학사원장 상 학년이 '4학년'으로 입력된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대상자로 간주
 - ※ 온라인 학생신청 및 신청인 동의서 공인인증서 서명 필수
- (평가기준) 3학년 학위과정 중 추진된 내용, 향후계획을 작성(진도보고서)하고 지도교수 의견과 함께 제출하면 대학 자체 심사 진행
- (유의사항) 진도보고서 평가는 잔여 1년간 장학생 자격유지에 대한 평가이며,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계속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충족 필요
- (추진절차) 계속장학생 중 심사통과자 확인 및 추천 후 등록금 우선감면 실시
 - 대상자 확인: 장학생 추천기간 내에 우선감면 대상자 확인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선택 ➡ 계속장학생 관리 ➡ '계속지원대상자 현황'에서 확인

- 학생 제출: 장학생은 4학년 진급 시 진도보고서 온라인 제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진도보고서 관리 ➡ 보고서제출

- ※ 장학생은 진도 보고서 제출 시 학생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 4학년 진급자('16년 이후 선발자)가 진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미지급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대학 추천: 우선감면 대상자의 계속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학자금지원시스템에 학사 및 수납정보 업로드 후 장학생 추천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선택 ➡ 계속장학생 관리 ➡ '계속지원대상자 추천'에서 추천 ➡ 제출완료

IV 일시지원 선발

구분	[재단]	[대학]	[학생]	[대학]	[재단]
내용	배정인원 안내	대상자 선발 및 등록	온라인 신청	장학생 추천	장학생 선정 및 발표, 장학금 지원
일정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1. 지원자격

-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 비선정된 재학생으로 예술체육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우수학생(3~4학년) 중 해당대학 자체선발규정에 의거하여 선발·추천된 자
- 단, 선발 당시 재학생(휴학생 제외)으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자 (Ⅲ.계속장학생 지원' 내 '1. 일반 계속장학생(지원기준)' 참고)
- 선발제외 대상

- 1)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기 수혜자
 - 가. 2018년도 2학기 현재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자격 유지자
 - 나. 2018년도 2학기 현재까지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지원종료된 자(조기졸업, 정규졸업, 지급종료)로 복수전공 또는 未졸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생(정규 수업연한 초과 이수자)
 - 다. 2018년도 2학기 현재까지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영구탈락자(자퇴, 제적, 성적미달 1회, 진도보고서 평가 탈락 등)
 - ※ 단, 자퇴 후 대학교에 진학하여 수혜대상자가 된 경우 수혜 학기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 2)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비수혜자
 - 가. 2018년도 2학기 현재 휴학생(학사징계자 포함)
- 3) 계약학과(등록금 전액지원/일부지원) 선발 제외
- 4) 아래 법령*에 따른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선발 제외 (학생부담분이 있는 경우 선발 가능하며, 학생부담분에 한해 등록금만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2. 지원규모

- (선발규모) 장학생의 휴학, 반환 및 성적미달 등으로 발생한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 (지원금액) 선발된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단, 생활비 미지원)

3. 배정 및 선발기준

- (배정기준) '18년 대학별 신규장학생 배정비율에 따라 배정하되 지역별 선발비율(수도권:비수도권=50%:50%) 적용

$$\text{대학별 배정인원} = \text{선발가능인원} * \frac{\text{대학별 신규장학생 배정인원}}{\text{신규장학생 배정인원 합계}}$$

-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잔여예산 / '18년 사업참여 대학 예술 및 체육계열 평균등록금
- ※ 단, 지역별 선발비율(수도권:비수도권=50%:50%) 적용하여 배정
- ※ 소수점 처리 방식은 [참고]에 따라 적용

< [참고] 배정인원 소수점 처리 상세 적용 방안 >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반올림 후 인원합계가 배정가능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가감 조정
 - ▶ (반올림 후 인원합계 > 배정가능인원) 반올림 적용에 따라 올림으로 정수 처리된 학교 중 소수점 이하가 가장 낮은 순으로 대학별 1명씩 인원 차감
 - ▶ (반올림 후 인원합계 < 배정가능인원) 반올림 적용에 따라 내림으로 정수 처리된 학교 중 소수점 이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대학별 1명씩 인원 추가
 - ▶ (동점대학 가감처리)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할 경우 동점인 대학에 추가 또는 차감 처리를 동일하게 적용

- (선발기준)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및 추천

4. 선발절차

- (대상자 선발·등록) 배정인원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관리자포털에 대상자 업로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 배정관리 ➡ ‘배정신청정보조회’에서 업로드

- (학생 신청) 대학에서 추천한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화면 내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선택 ➡ 신청하기
 ※ 장학금 신청 시 학생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공인인증서를 통한 장학금 신청으로 서류제출(신청서, 동의서 등) 생략

- (대학 추천) 신청완료 학생에 대해 관리자포털에서 장학생 추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 신청/추천관리 ➡ ‘장학생추천’에서 추천

V 장학금 지급 및 반환

구분	[재단]	[대학]	[학생]
내용	장학금 일괄 대학지급	(우선감면 시) 장학금 수령 (우선감면 미실시) 장학금 학생 지급	장학금 수령
일정	1학기: 3~5월 2학기: 8~10월	1학기: 3~5월 2학기: 8~10월	1학기: 3~5월 2학기: 8~10월

1. 지급절차

- 장학금은 학기별로 소속대학에 일괄지급(단, 학기별 2회에 한해 지급)
 - 대학은 학기별 마지막 회차(2회차) 추천(심사) 시, 누락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2. 장학금 지급 방법

- 계속지원기준 충족한 계속장학생은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 우선감면 적용불가자는 최종 등록완료 후에 개별지급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예: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가능
- 장학금 지급 시, 해당학기 재단 내 대출 또는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내역 존재할 경우 재단이 직접 상환(반환) 후 대학 지급
 - ※ 대출·장학금 상환(반환)금 및 대학 지급금액은 재단의 지급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
- 휴학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 보류되며, 복학학기부터 장학금 지원 재개
-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후 휴학 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이연불가)
 - ※ 생활비 수혜자는 해당금액을 포함한 수혜금액 전액 반환
 - ※ 단, 불가피한 경우(해당 학생과 연락 두절 등)에는 재단과 협의 후 이연 처리여부 결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등록금 학생부담분, 생활비에 한해 장학금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내에 장학생 및 소속대학으로부터 신청되지 않은 장학금 (당해 연도 재학(또는 복학) 학기에 대한 미신청 장학금)은 이월하지 않으며 지급한 것으로 간주

3. 장학생 자격상실(박탈) 및 반환

-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 영구탈락 기준

- ①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 1회 미달한 경우, 장학생에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미 충족 시 지원중단
 -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미충족 시 지원중단
 -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 ※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
- ② 전공 변경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지원중단
- ③ 4학년 진급 시 진도보고서 미제출할 경우 또는 제출하였으나 심사탈락한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16년 이후 선발자에 한함)

-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여야 함

-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장학증서 반납 조치)
- ② 편입,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중단 및 非예체능계로 전과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③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④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재단으로 공문 통보)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 재단에서 포기 관련 공문 제출 이후에는 수혜 포기 취소 불가

4. 증명서 발급

- (장학증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의 장학증서 온라인 발급(일시 지원으로 선발된 학생은 제외)
- (수혜증명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수혜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증명서발급 ➡ 증명서 발급

※ 온라인 증명서 발급 시 학생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VI 사업 운영관리

1. 중복지원 상세기준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학부과정 졸업 시까지 소속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수혜 가능
- ※ 단, 장학생이 재학 중 계속지원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타 장학금 수혜 가능

□ 중복지원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 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구분	종류
중복지원 예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 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2. 학적변동 시 조치사항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 사항 발생 시 소속대학 장학담당자에게 반드시 통보
- 대학은 장학생의 재학 중 학적변동 사항을 학자금지원시스템에 반영하고 한국장학재단에 통보
- 캠퍼스간 이동(전과)자 발생 시 재단 담당자 사전 협의 후 공문으로 상세내용 송부
- 소속대학의 내규에 따라 단과대학 및 학위 변경, 전과로 학제(4년제, 5년제 등)가 변경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

3. 대학 준비 및 관리사항

- 연도별 사업참여 및 신규장학생 선발을 위한 ‘대학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본·분교는 학교별 계획서 제출 필수(캠퍼스 보유대학은 통합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캠퍼스별 수도권여부가 상이할 경우에 한해 캠퍼스별 제출)
- 제출한 대학 신청서에 따라 재학 중 장학생의 지속적인 관리 실시

4. 사후관리

- 대학 현장모니터링 점검사항
 - (대학 추천) 학생 제출서류 허위사실여부, 재단에 제출한 자료와의 일치여부 확인 등

- (장학금 지급 실태) 우선감면 현황(등록금 고지서상 표기), 학자금 대출 상환, 학생 개인 지급, 학생 개별 장학금 지급 시 입금자명 (수혜장학 상품명) 등
- (대학 의무지원 이행여부) '18년 신규장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대학 의무 지원(학기당 100만 원) 이행 여부
- (계속지원기준 적합여부) 제출 서류의 업무처리기준 준수 현황, 증빙 서류 보관 상태 등
- (장학생 관리 실태) 인재육성 지원계획, 성과관리 계획 대비 이행 실적 등
 - ※ 현장모니터링 결과 장학금 지원 부적격자 또는 지원금액 부당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금액 전액 환수조치 및 해당 대학 매회 실태점검 실시
- 대학 신청서 이행관리
 - 대학 신청서 상 우수학생 지원계획에 따라 장학생 지원 및 관리
 - 당초 제출한 대학 신청서의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협의

5. 대학 의무사항

- 연도별 사업참여 및 신규장학생 선발을 위한 대학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 장학생 선발·지원을 위한 자체선발기준 수립 및 장학생 평가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행
 - 자체선발기준 수립 및 장학생 평가와 관련하여 대학에서는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며, 재단에 정확한 기준 및 평가결과만을 제공
 - ※ 장학생 선발 등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이해관계자, 지도교수 등은 제외
- 관련서류의 열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학생 추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협조
- 예술체육비전장학생 추천·지급·관리에 따른 관련서류 확인 및 보관

- 장학금지원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요청에 성실히 대응
 - ※ 계약학과 장학생 관련 정보 요청 시에도 재단에 성실히 제공
-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수시 통보하고, 중복지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협조

6. 장학생 준수사항

- 졸업 후 예술계 또는 체육계로 진로를 설정 및 유지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히 대응
-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연락처 변경 시 소속학교로 즉시 연락)
-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 국가우수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
 - ※ 전인적 인재성장 계획서 상 계획 실행 및 재단의 지식멘토링 멘토로 적극 참여

7. 기타사항

- 대학의 운영실적(성과) 평가와 우수사례 등을 반영하여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가능
- 대학 신청서 평가, 부당 집행 사후조치, 제도개선 등을 위한 별도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구성 및 운영
- 동 업무처리기준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간주

VII 사업 추진일정

□ 신규장학생 선발

사업공고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공고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18년 3월
대학 신청서 제출	○ 대학별 대학 신청서 제출	대학	'18년 3월
대학별 인원배정	○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 및 안내	한국장학재단	'18년 4월
신청·접수	○ 대학별 자체선발기준에 의거 장학생 선발 ○ 대학추천 대상자 온라인 학생신청	대학 학생	'18년 4월
선정 및 발표	○ 장학생 최종 선발 및 발표	한국장학재단	'18년 5월
지 급	○ 장학금 지급(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18년 5월

※ 추진상황에 따라 상기일정 변경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

□ 계속장학생

구분			1학기	2학기
사업공고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안내 ○ 장학생 신청추천안내(학생·대학)	교육부 재단	'18년 2월	'18년 8월
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 계속장학생(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재단	'18년 1월	'18년 7월
	○ 계속장학생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	대학	'18년 2월	'18년 8월
신청·접수	○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 장학금 온라인 신청 ※ '16년도 신규장학생부터 진도보고서 제출 필수	학생	'18년 1월	'18년 7월
소속대학 확인 및 추천	○ 계속장학생의 계속지원기준 충족 여부심사(진도보고서 제출포함)	대학	'18년 1월	'18년 7월
심사	○ 장학생 계속지원기준 충족 여부 확인	재단	'18년 2월	'18년 8월
지급	○ 장학금 지급(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재단	'18년 3월	'18년 9월
결과보고	○ 학기별 지급 결과보고(소속대학→장학재단)	대학	'18년 7월	'18년 12월

※ 추진상황에 따라 상기일정 변경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

참고1 제출서류 총괄표

구분	신청서류	양식	제출형태(방법)
신규장학생	필수 제출	학업 계획서	양식1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학업계획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 예술 및 체육분야로의 진로설계 및 비전 등 기재
	필수 제출	전인적 인재성장 계획서	양식2 ○ 「전인적 인재성장 계획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 사회공헌 노력 실적 및 계획 등 기재
입시지원	대학 자체선발		○ 재단으로 직접 제출하는 서류 없음(대학 자체선발) ※ 소속대학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대학으로 제출
계속장학생	4학년 진급자	진도보고서	양식3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진도보고서」 작성하여 온라인 학생신청 시 제출('16년 이후 선발자)
공통	복지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대학 추천 시 복지정보연계망을 통해 수급자로 확인되지 않은 자에 한해 대학이 공문을 통해 해당 학생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대학	사업 참여	대학 신청서	양식4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 신청서」 작성 후 재단에 공문 및 온라인으로 제출 ※ 대학의 우수학생 자체 선발 및 지원 계획 등 제출

※ 신청서류 양식 및 자세한 작성요령은 참고의 양식 참조

※ [양식1] 학업계획서, [양식2] 전인적 인재성장 계획서, [양식4] 대학 신청서는 hwp, word 파일 형태로 온라인 업로드

※ [양식3] 진도보고서는 PDF파일 형태로 온라인 업로드

※ 학생 신청 시 신청서류 중 하나라도 미제출(업로드)하는 경우 심사탈락

※ 대학이 대학 신청서를 미제출할 경우 당해연도 신규장학생 선발 제한

※ 학생 제출서류는 10년간 소속 대학이 보관해야 함

학업계획서

<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2장 이내) >

■ 작성자(추천학생) 유의사항

1. 신청자는 계획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온라인 학생신청 시 지정된 파일형식으로 업로드하여 주십시오.

■ 작성요령

1. 이하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2.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부분은 삭제하여 **총 3장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부내용별 작성요령은 파란색 설명글을 참조, 작성 시 파란글씨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획서 작성 시, 학생의 신청계열(음악, 미술, 체육, 공연예술)과 관련한 지원 동기, 학업·진로 계획과 기여 방법 항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동기 (0.5장 이내)

※ 본인 신청계열(음악, 미술, 체육, 공연예술)과 관련하여 해당 전공, 진학·진로를 결정하게 된 지원동기와 계기를 자세히 기술

2. 학업·진로 계획과 기여방법(2.5장 이내)

※ 본인 신청계열(음악, 미술, 체육, 공연예술)과 관련하여 계획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추진 및 실행계획(대학 재학 중/ 대학 졸업 후)을 자세히 기술
 ※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나 타인과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지 기술

전인적 인재성장 계획서

-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이하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 계획서는 총 3장 이내로 작성
- ※ 작성 시, 내용에 본인의 소속을 알 수 있는 단어, 문구, 이름 등을 기재하는 경우 심사위원 심사 시 감점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람
(예) 00고등학교, 00대학교, 00총장, 00학교장, 00교수 등
- ※ 제출한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는 장학생 선발·심사 시 평가자료로 활용

1. 사회공헌 노력 및 활동 (1장 이내)

- ※ 학생 본인이 지금까지 수행한 주요 사회공헌 노력 및 활동을 3가지 이내로 기술하시오.
 - 해당 활동에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얼마만큼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역할을 했는지 등을 기술

2. 대학(원)생활 중 사회공헌 등 활동 계획 (1장 이내)

- ※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지원 받은 후, 취득한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가 및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지 자세히 기술하시오.
 - 대학입학 후대학 재학 중 계획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추진 및 실행계획을 자세히 기술하여 사회 공헌 및 기여에 대한 의지 표명. 예) 사회봉사, 기부 등

3. 국가 및 사회 기여·환원 계획 (1장 이내)

- ※ 졸업(대학, 대학원 등) 후 사회에 진출하여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기술하시오
 - 생애 전반에 걸쳐 수행하고자 하는 사회 기여 및 환원 대한 계획을 기술하시오.(본인의 전공(예정)분야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무방함)

<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지도교수의견 포함 2장 이내) >

■ 작성재(추천학생) 유의사항

1. 이하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2.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부분은 삭제하여 지도교수의견 포함 총 2장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은 진도보고서 중 장학생 진도보고란을 본인이 작성하고 확인 서약을 한 후, 작성완료한 진도보고서를 본 유의사항을 함께 지도교수에게 확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지도교수 이외의 작성인에 의한 의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장학생 진도보고 및 지도교수 의견 기재사항이 모두 작성완료 된 진도보고서를 pdf 형식으로 온라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재(지도교수) 유의사항

1. 지도교수 의견을 작성하시고 확인 서약해주시기 바랍니다.
2. 컴퓨터(소제목은 17 point, 본문내용은 15 point) 또는 자필로 작성하며, 자필로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필기도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지도교수 의견은 학생에 대한 추상적인 언어나 미사여구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도교수 의견은 반드시 작성한 교수가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작성 완료된 의견서를 해당 학생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6. 세부내용별 작성요령은 파란색 설명글을 참조, 작성 시 파란글씨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보고서

장학생 진도보고

선정연도	0000년도	계열	
성명		학번	
소속(대학교)		학부(계열)/학과	
<p>※ 장학생은 선발당시 계획서와 관련하여, 3학년 학위과정 중 추진된 내용, 기타 활동내용 및 향후 계획 등 기술</p>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_____ (인)

지도교수 의견

성명	
소속학교	
소속학과	
직위	※ 직위 및 학과는 학과장(○○학과), 지도교수(○○학과) 등으로 기재
<p>※ 학생이 제출한 진도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학과 전공자로서 학생의 역량, 우수성, 자질,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자유기술</p>	

20 년 월 일 지도교수 성명 _____ (인)

[양식 4]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 신청서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 신청서			
대학 기본 정보			
대학명		권역구분 (수도권/비수도권)	※ 대학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인 경우 수도권, 나머지는 비수도권으로 기재
본/분교			
선발계열	<input type="checkbox"/> 음악 <input type="checkbox"/> 미술 <input type="checkbox"/> 체육 <input type="checkbox"/> 공연·예술		
<p>본 대학은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선발인원이 배정될 경우, 귀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한 「대학 신청서」 상의 계획에 따라 재단이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여 우수학생 선발·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만약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과 관련하여 불이익(선발인원 감원, 참여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2018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총장 성명 _____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p>			

(본문)

1.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선발기준
※ 예술체육비전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대학 자체선발 기준(동점자 처리기준 포함) 기술 ※ 반드시 전공별 구분 기술(음악/미술/체육/공연예술) - 단, 대학 특성화 방안에 따른 비해당 전공은 작성 생략 가능 - 재단에서 제공한 선발기준 관련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기술 예시) 소득구간(분위)별 가점 부여 세부기준, 대학별 별도기준(10점) 평가기준 등
2. 장학생 관리방안
※ 장학생 선발 후 재학기간 중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예시) 지도교수 멘토링, 프로젝트 및 연구활동 참여 관리 등 ※ 반드시 전공별 구분 기술(음악/미술/체육/공연예술)

참고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 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의 2에 따라 재단은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존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관리 업무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관리 ■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및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시행계획수립, 환수규정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및 저소득층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파란사다리장학금) 시행계획수립 및 환수 등 ■ 법령상 의무이행 등 <p>[선택적 동의사항] 취직을 위한 채용정보 및 박람회 정보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수집·이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대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된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구분(근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 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지역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등 <p>※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보유·이용 기간	<p>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p> <p>* 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 계약종료일(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로부터 10년까지를 의미함</p>
수집·이용 동의 여부	<p>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보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p>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p>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제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그 산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공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사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성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관련 단체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희망사다리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제공·조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재단법 제16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사회사에 대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관련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희망사다리장학금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 저소득층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파란사다리장학금)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 이전(정보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 이전(정보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사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숙사비 지원 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국민기초생활수급금지급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위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정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 특별법시행령」 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규정 등 <div data-bbox="1350 691 2119 73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p>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공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p>※ 등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제공 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p>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채권관리,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p>
제공·조회 동의 여부	<p>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제공·조회 동의의 여부	<p>[선택적 동의사항]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업 기관에 제공 <p>*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p>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동의를 거부 할 권리 및	<p>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p>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회복지원제,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우자 이차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 지원 등 제공·조화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 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 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3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장학생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본인은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불이행(미준수) 시에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대학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준수 의무사항>

본인은 국가장학금(재단 장학금 포함) 신청인으로서 장학생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장학금을 지원받는 쉰 기간 동안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최상의 학업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가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본인은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만약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 지겠습니다.
4. 본인은 대학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국가장학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상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유발생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됨을 인지합니다.
6.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가. 본인은 재학기간 동안 계속지원기준 1회 미달 시 영구 탈락됨을 인지합니다.
 - 나. 본인은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영구탈락과 동시에 장학금 전액을 반환 하겠습니다.
 - 다. 본인은 재단의 지식봉사멘토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2.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3.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1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학자금 목적 외 사용
-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 어학연수프로그램 참가,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 준용)
-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자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보유 등으로 소득구간(분위)이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연령, 제한대학, 해당학과, 학적·등록(상태), 성적, 이수학점, 특별추천, 소득구간(분위), 대출제한 등)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에 반환)
- 재학중 학적변경 및 졸업 이후 의무봉사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준용)
-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지급 이후 허위근로, 대체근로 및 대리근로 등으로 확인된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4.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

본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지원을 포함)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즉시 상환 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동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공공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 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p>※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p>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5.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6. 국가우수인재 공동체 홈페이지 가입 등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대통령과학장학생 및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이공계지역대, 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으로 선발된 학생에 해당)

본인은 국가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고객관리·홍보 등의 서비스 수혜를 위해 국가우수인재 공동체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7. 업무처리지침상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붙임장]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 영구탈락 기준

- ①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 1회 미달한 경우, 장학생에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미 충족 시 지원중단
 -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미충족 시 지원중단
 -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 ※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
- ② 전공 변경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지원중단
- ③ 4학년 진급 시 진도보고서 미제출할 경우 또는 제출하였으나 심사탈락한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16년 이후 선발자에 한함)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

-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장학증서 반납 조치)
- ② 편입,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중단 및 비예체능계로 전과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③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④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재단으로 공문 통보)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 재단에서 포기 관련 공문 제출 이후에는 수혜 포기 취소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고4

2018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벌),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유원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세종),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과 특별법 및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된 대학 중 국가우수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18년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 제한대학 제외)